

한국의 환경 영향평가제도와 개선과제

박영규, 김영화 /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요약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보전에 기여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 방지기능으로 정착되었으며,
2. 정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3. 대규모 개발사업에 철저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케하여 국민화합을 유도하였으며
4.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확보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영향평가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2. 영향평가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정부기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수집되고 발표하여야 하고
3.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4. 영향평가서 전문검토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1. 서 론

인간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시대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급속한 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많은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로 예외는 아니다. '60년 2천5백만명이던 인구가 '86년에는 4천2백만명을 돌파했으며, '70년대에 50%이던 도시화율은 '86년에는 75%, 2000년에는 83%를 육박하게될 전망이며, '63년부터시작된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은 그 자체로서는 성공적이어서 국민의 물질적 욕구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한한 국토에 미친 환경피해는 아무도 부인할수 없다.

폭발적인 인구의 수용, 급증하는 도시화의 대응,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한 모든 개발활동은 언제나 환경의 변환을 동반하게되며, 환경의 변환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해 인간을포함한 생태계의 변화와 그 영향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문제는 모든 개발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과제이며, 이러한 과제는 개발활동의 구상,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료이후까지 부단히 검토하고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화한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이며, 이 제도는 개발행위로부터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돌아켜보면, 제1차 내지 제3차의 경우에는 개발에 치중하고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치 못한것은 매우 아

쉬운 점이다. 그러나 제4차 경제사회개발기관('77 ~'81) 말기인 '80년1월15일에 환경행정전담기구인 환경청이 발족되었음을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꼭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환경청이 발족되기 전 '77년12월말 개정된 환경보전법에 EIA에 관한 입법체계를 살펴보면 개발활동에 관한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고려를 명문화 하였기는 하나, 각종의 개발사업을 규제하는 법규에서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정도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개발행위자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이를 간섭·관여하는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했던 정부내 각부처간의 입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고려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오염된 환경이라는 심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국민적 과제로 대두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환경문제는 개발행위전에 사업의 구상·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제도로서는 EIA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게 되어, 동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환경보전법에 명문화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크게 11개 대상사업이며, 이들 11개 대상사업은 관계법에 따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한국의 관계법, 이제까지 협의 완료한 평가서를 요약한 자료집, 평가서 작성지침서, 미국 및 일본의 관계법령, 미국의 평가규정, 일본의 평가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제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2. EIA의 제도화 경위

가. 초기도입 단계

EIA에 관한 환경보전법상의 도입은 1977년12월3일 공해방지법의 전면개정(법률제3078호)에서라고 하겠다. 즉, 1977년12월 제98회 국회에서 법률제2305호의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면서 동법제5조에 「사전협의」라는 제목하에 “도시의 개발이나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건사회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초기도입단계의 표현이다. 내용상으로는 명백히 EIA에 관한 의도의 표현이면서도 환경영향 평가라는 제목을 붙이지 못하고 「사전협의」라는 제목으로 하였음은 동제도의 도입이 관계부처간에 인식이 미흡하였고, 얼마나 심한반대에 부딪쳤든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것이라 할 수 있다. 명문화된 이 제도는 1978년7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것이나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음은 당시 환경영향을 담당하고 있던 보건사회부 환경관리실이 준비부족에 있었지만 부처간의 비협조가 더욱 문제였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나. 명문화 단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상 명백한 표현은 그로부터 2년후인 1979년12월28일 제103회 정기국회에서 환경보전법 부분개정(법률제3213호) 하므로써 가능하였다. 동법제5조의 제목을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로 하였으며 조문의 규정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공단조성, 에너지 개발, 공업항 또는 도로의 건설, 수질원 개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관하여 미리 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당시까지 환경청은 설립되지 아니 하였으나 '80년1월에 환경청을 설립할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중(1979년 12월28일 법률제3229호)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었으며, 동개정법은 1980년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다. 실시 단계

1980년 1월 환경청이 발족되면서 본제도의 실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설 기관으로서 현재의 당면과제인 오염방지 계획수립 및 자료확보에 급한 실정이었고 본제도의 착실한 발전을 위한 준비는 마음만 조급한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7월, 드디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81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각국의 법제화와 실시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에서 검토된 전문가의 논문을 검토

하는 한편,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반년간의 검토와 2차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부문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1981년2월28일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2차에 걸친 관계부처실무자회의와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평가대상사업으로 낙동강 하구둑공사를 위시한 20개 중요대상사업을 확립하였다.

라. 정착. 발전단계

1) 평가주체의 범위확대

1981년2월28일을 기해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동년12월31일에 환경보전법을 부분개정(법률제3505호)하여 평가주체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1차 확대하였으며, 1986년12월31일 동법을 부분개정(법률제3903호)하여 환경영향평가주체를 2차 확대하여 민간사업자까지 포함시켰다. 즉, 1차 및 2차의 확대결과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민간인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하도록하여 평가주체의 평형을 이루하였다.

2) 평가대상사업의 범위확대

'83년4월13일 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101호)을 개정하여 종전 20개의 중요대상사업에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가시켰으며, 또한 '87년6월4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72호)을 재차개정하여 도시의 개발은 인구50만이상인 도시의 경우에서 인구30만이상인 도시내의 개발사업으로, 공단조성은 종전15만m²이상인 경우에다 공장이 신설 또는 증가 면적이 15만m²이상일 경우를 추가하고,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300ha에서 30ha이상으로 1,000ha이상 간척사업은 100ha이상으로 확대하는등 대상사업 그 자체를 명백히 하여 분쟁및 민원의소지를 없애는등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였다.

3) 평가전문기관의 육성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성및 종합과학성을 고찰할 때 평가전문기관의 육성은 평가서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피해가 적은 대안을 도출하는데 필수적인것이다.

그리하여 환경청에서는 현재 국립및 정부출자연구기관 4개소, 대학부설환경관련연구소 22개소, 기술용역업체 48개소, 기타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중에서 11개소, 총75개를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하여 평가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 있다.

3. EIA제도의 경험과 정책효과

가. 제도화에 따른 배려

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로 미국의 제도와 경험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현실과 타협을 모색하였다. 우리가 경험한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동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시에 이들 문제들을 고려의 대상으로 하였다.

1) 이미 내려진 결정의 정당화. 도구화 경향

2) 평가서(EIS) 작성기관의 장기및 과다한비용요.

3) 그럼에도 EIS가 필요적 구비서로서 요식행위 이상의 실효를 갖지 못한다는 불만.

4) 공중의 참여의식의 소극화

5) EIS에 대한 평가(조사) 기준의 설정애매.

6) EIS의 충실성및 객관성 결여등이다.

나아가 우리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양제도를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이 도표화 할 수 있겠다.

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및 협의

1) 평가서 작성절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절차는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의 평가서작성절차는 여러분야로 세분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청장이 정하고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환경청 고시 제87-13호)에 의한 정식절차형식의 평가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 평가서작성의 대행

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가 직접 평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환경이 갖고 있는 특성과 평가기법등을 고려할 때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주체는 평가능력이 있는 개인, 용역업체, 전문연구기관, 대학연구소에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이때 사업주체(평가서 작성주체)는 대행자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표1> 한국과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사 항	한 국	미 국	비 고
대상사업 작성과정 (평가서)	주요법안개발사업 1회작성	연방기관 결정 행위로서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일정의 행위 •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행위 최초 EIS ↓ 최종 EIS • 기타환경에 영향을 미칠 행위 (환경조서작성후 EIS작성 여부 결정)	우리의 경우 대상이 제한적이나 부처간 협의로 대상을 염선 기간의 장기화, 비용의 과대를 방지하고자 함
작 성 자 평가서조사 평가서구성 공증참여 조 정	사업시행자 환경청장(자문기관을 거침) 요약문~결론 불포함 환경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자	행정기관의 장 관련연방기관, 공사단체 주민등 일반대중 등 최대한 보장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장이 자체조정	조사기준의 객관성 평가의 충실 현실 문제 요식 행위성의 억제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평가대행자의 범위를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현연구소, 기술용역업체등 평가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평가서의 구성, 작성시기 및 협의

가) 평가서의 구성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①정부, 지역사회, 개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개발사업 계획도구의 하나로서 ②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중 부정적인 영향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③행정기관에 신청된 개발사업이 인허가를 위한 사업검토 및 결정과정에서 요구된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그 계획의 실시로 인한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서류 즉,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장이 정하는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작성요령은 주로 평가서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평가서 주요 구성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구성항목

항 목	내 용
1. 요약문	사업의 내용,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및 대안의 선정
2.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내용 및 효과

3. 환경현황	자연환경(지형, 지질, 토양, 기상, 생태계, 해양 등) 생활환경(대기질, 수질, 소음, 악취, 폐기물, 위약, 경관 등) 사회·경제환경(인구, 산업, 주거, 교통, 문화재, 천연자원, 토지이용 등)
4. 사업으로 인한 환경 에의 영향	장. 단기간의 유익한 환경영향 과 악영향의 규명, 회복불가능 한 자원의 기술
5. 환경에 미칠 악영 향의 저감 방안 및 대 안의 설정	대안의 설정 및 비교

나) 평가서 작성기간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사업의 계획과정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을 최대화하는 한편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어떤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직접·간접적인 영향은 사업지역내와 사업지역외 인접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며 시간적으로는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 건설이후에 나타나는 장기적인 영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영향이 고려 검토될 수 있는 시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만 사업시행의 결정여부와 대안의 검토 그리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도 어떤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절안단계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평가대상사업별로 평가 협의 요청시기를 대부분 개발계획을 정하기 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시기가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다.

다) 평가서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는 주로 환경영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관관청이나 특별히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미리 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시 평가서의 검토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청예규 제36호)”에 따라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 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사업을 주관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평가서의 기본적 검토사항으로는 내용의 충실성과 사업실시로 인한 환경상 영향의 정도와 범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내용의 충실성검토에서는 ①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영향 인정의 적정성 ② 환경영향조사의 충실성, ③ 중요한 환경상의 영향예측 및 평가여부, ④ 가능한 합리적 대안의 고찰여부를 다루고, 사업실시로 인한 영향의 정도와 범위의 검토사항으로는 ① 악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② 자연(자원포함) 및 생활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 등으로 볼 수 있다. 평가서 검토기간은 원칙적으로 50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사업관제

환경영향평가의 마지막 절차가 사후관리이다. 평가주체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 평가서가 검토되어 협의가 끝나면 사업실시자(평가주체)는 평가서에 제시하고 있는 사업실시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이나 이를 위한 조사관찰사항과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비교·검토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절차가 사후 관리이다. 사후관리방법으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사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가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는 사업기간이 길거나 사업완료 후 단기간에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

는 장기적 환경영향을 구명, 조사, 검토하거나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계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는 사업의 특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실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환경영향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거의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서 협의조건으로 사후관리내용, 조사 항목 및 시기, 검토방법, 관리기간 등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다. 평가대상사업 및 실적

우리나라의 경우 영향평가대상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한정하고 있다. 즉,

① 도시의 개발

②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③ 에너지 개발

④ 항만건설

⑤ 도로건설

⑥ 수자원개발

⑦ 철도의 건설

⑧ 공항의 건설

⑨ 매립 및 개간사업

⑩ 아파트지구의 개발

11) 관광단지의 개발 등이다.

그러나 이들 대상사업 모두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만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본제도 시행후 '88년 말까지 협의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적

구 분	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총 계	312	4	27	48	53	53	69	73
도 시 개 발	23		1	3	7	2	8	5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33	1	1	6	4	4	6	2
에 너 지 개 발	7	1		2	1	1	1	2
항 만 건 설	4			3				1
수 자 원 개 발	9	1	2	1		4	1	
공 유 수 면 매 립	16		3	1	2	2	3	5
택 지 개 발	62	1	8	13	10	10	11	12
관 광 단 지 개 발	37			2	5	10	9	14
도 로 건 설	8				1	2	3	2
철 도 건 설	3					3		1
공 항 건 설	2					1		1
전 원 개 발	108		12	17	23	4	27	18

라. 정책효과

1981년 2월부터 시행된 EIA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이 제도가 환경보전에 기여한 정책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환경오염 예방기능으로서의 정착”이다. 지난 7년간의 경험과 끊임없는 홍보의 결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평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며 어떠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지를 자주 환경청에 문의하는 사례를 보면 사업자들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대책을 해당사업계획에 미리포함시켜야만이 동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식이 사업자들 뿐만아니라 행정기관의 계획수립자,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보다더 확고하게 인식된다면, 본 EIA제도는 환경오염예방기능으로 정착되어 자리라고 확신한다.

둘째, “환경업무관련 정부기관간의 협조체제구축”이다. 즉, 각종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물론 이들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도 환경영향평가의 이해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인구, 교육, 교통등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정부각부처에 이 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세째,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케 하여 민원해소등 국민화합유도” 효과이다. ’60년대 및 ’70년대의 개발우선정책 추진시기에는 개발사업으로 환경피해가 예상은 되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대책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EIA제도 시행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환경피해방지대책이 동 사업계획에 포함되게 하므로써 민원해소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대규모사업에는 보다 철저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이 수립 시행되도록 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인식되어 다소나마 국민화합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다.

네째,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확보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법 제5조의 2에 “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후 그 사업이 환경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자에게 사업계획의 조정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바로 개발사업의 계획을 조정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등 사업계획에 고려할 수 있음을 명문화한 것이며, 이 조정기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개발과 보전의 조화도모라 할 수 있겠다.

4. 본 제도의 발전과제

가. 평가서 작성의 획일성

환경보전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11개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서작성 지침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획일적이다. 뿐만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규모나 위치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결과 대상사업중 소규모이거나 영향이 적은 것일지라도 동일한 지침에 의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대상사업별로 평가서작성지침을 개발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동일한 대상사업중 소규모이거나 위치에 따라 영향이 적은 것은 간역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종합화 및 과학화

사업자나 평가대행자들이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자료가 너무나 다양하다. 다시말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에 여러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활용한다면 환경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각기관마다 자료를 산출하는 방법과 목적이 다를뿐만아니라, 자료생산에 사용된 장비및 분석방법이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환경청이 주관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국내외의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보존 및 집대성하므로써 해결 가능할 것이다.

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어떠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체는 사업지역의 주민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주민 참여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을 물론 장차 관계 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라. 평가서 검토기관의 전문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상설전문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조직의 보강 등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래 환경청내에 상설 전문기구 설치 문제를 검토절차, 기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평가서 내용의 객

관성 확보 협의조전을 당해개발사업의 인허가의 요건화 등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EIA제도의 성패는 국민과 정부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이 오염되기 전에 예방하여야겠다는 신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5. EIA제도의 전망

환경오염 예방기능인 본제도는 기필코 발전되어야 하고 내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이제까지 발전, 정착하여온 단계보다 한 차원 높은 내실화의 단계로 전진되어야 할 것이며, 본제도의 전망을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망

단계	기간	평가대상	추진방안
제도 도입	'79-'81	정부사업중 대규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도의 정비 ○ 국민인식제고
정착, 발전	'82-'86	일체규모이상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확충 ○ 평가전문기반육성 ○ 평가기법개발 ○ 사후관리제도정착 ○ 전문기관의 평가주도
제도의 내실화	'87-'90	민간주체개발사업을 포함한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조건이행확보 ○ 평가기법보급확대

6. 결 론

이상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제도화 경위, 그간의 경험 및 실무, 발전과제 및 전망 등을 고찰하였다. 앞으로 본제도가 내실화하여 환경보전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과 협조, 정부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원, 전문기술 및 인력의 개발, 자료의 과학화 및 종

합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가 환경보전의 주요정책으로 내실화 되기를 기대한다.*
(이 자료는 영남대학교 부설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환경연구」 제9권 제1호에 수록된 것을 발췌, 게재한 것입니다.)